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11. 26(화) 10:00

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
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
(푸른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16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3.

2. 제안이유

- 가.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에 관한 의견
- 나.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(안)

3.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

- 가. 장기미집행시설 : 총 2건

(단위 : 건)

구 분		계	완충녹지	공공공지	비 고
계		2	1	1	
해 제 에 관 한 의 견	존치시설 (재정적 집행가능시설)	2	1	1	- 존치시설 •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: 예산투입 •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: 민간시행
	존치시설 (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)	-	-	-	- 해제시설 • 해제유보시설 : 난개발 우려 등으로 당장 해제 불가능한 시설 • 해제가능시설 : 즉시해제 가능시설
	해제시설 (해제유보시설)	-	-	-	
	해제시설 (해제가능시설)	-	-	-	※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가이드라인(17.9.)

※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: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

나. 미집행시설 : 총 3건

(단위 : 건)

구분	계	공공청사	주차장	문화시설	비고
계	3	1	1	1	
도시계획 결정 시설	3	1	1	1	

4.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

가. 장기미집행시설 : 2건

(단위 : 백만원)

시설명	사업개요			계획기간 중 사업비(2025~2030)												
	건수	사업규모 (㎡)	총사업비	집행방식별 사업비						단계별 사업비						
				총계	재정적			비재정적			1단계			2-1단계		2-2단계
					국비	시비	구비	민간투자	공공기여	'25	'26	'27	'28	'29	30년 이후	
총계	2	2,270.9	1,036	1,036	-	-	916	-	120	-	1,036	-	-	-	-	
녹지	1	2,146	430	430	-	-	310	-	120	-	430	-	-	-	-	
공공공지	1	124.9	606	606	-	-	606	-	-	-	606	-	-	-	-	

나. 미집행시설(도시계획 결정시설) : 3건

(단위 : 백만원)

시설명	사업개요			계획기간 중 사업비(2025~2030)												
	건수	사업규모 (㎡)	총사업비	집행방식별 사업비						단계별 사업비						
				총계	재정적			비재정적			1단계			2-1단계		2-2단계
					국비	시비	구비	민간투자	공공기여	'25	'26	'27	'28	'29	30년 이후	
총계	3	3,951	66,458	66,458	31,128	-	14,144	-	21,186	10,792	17,668	8,382	29,626	-	-	
공공청사	1	1,983.6	31,128	31,128	31,128	-	-	-	-	8,665	14,081	8,382	-	-	-	
주차장	1	903.5	5,704	5,704	-	-	5,704	-	-	2,127	3,577	-	-	-	-	
문화시설	1	1,063.9	29,626	29,626	-	-	8,440	-	21,186	-	-	-	29,626	-	-	

5. 참고사항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제8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

- 1) 지방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
- 2)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(안) 의견청취

나.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[별표19]

- 1)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지방의회 보고

6. 검토의견

가. 제안이유

본 의견 청취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-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존치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.

완충녹지 : 대기오염, 소음, 진동, 악취 등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녹지

공공공지 : 시·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, 경관의 유지, 재해대책,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

나. 주요 내용

○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

-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건으로,
완충녹지 및 공공공지 각각 1건으로 장기미집행(10년 이상)된 시설로
- 시설 총면적은 2,270.9㎡(완충녹지 2,416㎡, 공공공지 124.9㎡)이며,
- 총 사업비 : 10억 3천6백만원(완충녹지 4억 3천만원, 공공공지 6억6백만원)

-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단계별로 3년 이내 1단계 사업으로 2개소, 4~5년 이내의 2-1단계 사업 1개소로 집행계획을 수립함.

- 독산동953-9번지 공공청사는 2023년 6월 금천세무서 신축을 위해 현 금천세무서 부지에 결정된 면적 1,983.6㎡의 국세청 소유의 국유지로서 현재 건축허가 절차 진행 중이며 2025년 착공하여 2027년 완료 예정임.
- 가산동144-1번지 외 1필지 주차장은 2024년 3월 결정된 면적 903.5㎡의 구유지로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 중으로 2026년까지 완료 예정
- 시흥동992-28번지 문화시설은 2022년 2월에 결정된 면적 1,063.9㎡의 사유지로서 기아자동차부지 개발에 따라 받는 공공기여 시설 중 일부를 도서관으로 계획하여 2028년까지 조성 계획임.

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의 장기미집행 시설 중 완충녹지의 경우 종합병원 사업 추진에 맞추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, 공공공지는 계획 예산 대비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청소년 쉼터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.
미집행 시설은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본 안건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,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정례회 이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봄.

관계법령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4. 8. 7.] [법률 제20234호, 2024. 2. 6., 일부개정]

제48조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)

①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. <개정 2011.4.14.>

②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.>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(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·고시한 도시·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4.14., 2013.3.23., 2013.7.16.>

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. <신설 2011.4.14.>

⑤ 제4항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4.14.>

[전문개정 2009.2.6.]

[제목개정 2011.4.14.]

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」

[시행 2024. 9. 20.] [대통령령 제34319호, 2024. 3. 19., 일부개정]

제42조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)

① 생략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이라 한다)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·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 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·군계획시설(이하 이 조에서 “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. <신설 2012.4.10, 2014.11.11>

1~3 생략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 중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. <신설 2012.4.10, 2014.11.11>

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(도시·군계획시설의 명칭, 위치,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)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. <신설 2012.4.10>

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, 단계별 집행계획, 교통,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4.10>